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. 9. 7 선고 2022가단1049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20. 10. 15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
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. 4. 12. 접수 제15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안민영

청구원인

1. 양수금 청구

가.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본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서 양도대상 채권의 원금 및 이자, 지연손해금등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모든권리, 보증인에대한 모든권리,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일체를 가지는 양수인인 법인입니다. 또한, 소 외 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,채무 등의 권리일체를 원고회사가 인수키로 하였고, 본 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사실을 소외 C 에게 통지하였습니다.

순번	채 권 양 도 인	채 권 양 수 인	채권양수도계약일	비고
1	중소기업은행	(주) D	2008.5.27.	
2	(주) D	(주) E	2008.6.27.	

2. 소외 C 은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카드론거래(인터넷카드론거래)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정서를 승인하고 이에 대출금을 받았고 원리금을 계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, 이후 소외 C 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 112717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

2. 사해행위 취소 청구

가. 원고는 아직 변제받지 못한 위 금원을 변제 받고자 보전절차를 취하려 하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2020.10.15. 협의분할예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.4.12. 청주지방법원 송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15751호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.

나. 소외 C 은 이미 채무가 있음을 알고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무자력이 된 것이며 이것은 명백한 사해행위

위에 해당합니다.

3. 결어

마른 것입니다.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충청북도 충주시

(도로명주소)

충청북도 충주시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2층 호 78.68 m²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충청북도 충주시 대 1019 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 유 권

대지권의 비율 : 1019 분의 66.18

-이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관할-

